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윌일	2018. 10. 15.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제103호 제출연월일: 2018. 10. 15. 제 출 자: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O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 중 협의체의 기능 등일부 사항이 명확치 않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세부사항 개정(안 제4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명시(안 제7조)
- 다. 별표 삭제(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O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가) 수정권고안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한다. <u>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u> <u>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u>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 한다. <u>다만, 금품·</u>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 한다.

- 권고사유 : 위원의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 미흡,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부족
- 반영사항 : 권고안 원안 반영
- (나) 수정권고안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권고사유 :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 반영사항 : 권고안 원안 반영
- (2)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 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가. 예고기간 : 2018. 8. 20. ~ 2018. 9. 13.(20일 이상)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6) 충청남도 소관 실과 : 환경보전과

□ 개정조례안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 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의 제목 "(협의체의 기능)"을 "(협의체의 협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를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
 -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지원
 -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 5.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
 - 6.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계획 (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후 보완·수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다.
 -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범위 안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제13조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13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제7조제1항 관련)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 ①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환 경 과 장	이 한 철
안	환경자원팀장	박 승 선 (746-5541)
자	담 당 자	김 준 용 (746-5543)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구성・운영)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
한다)은 ~ 하여야 한다.	다)은 ~ 하여야 한다. <u>다만, 금품·</u>
1. ~ 3. 생략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1. ~ 3. 생략
제4조(협의체의 기능) 제3조에 따	제4조(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라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은 다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와
음 각 호와 같다.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은 다음
	<u>각 호와 같다.</u>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
기관의 선정	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
에 대한 협의	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
	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u>〈신 설〉</u>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
	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
	을 위하여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 다.

- 전년도 6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 및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2. 심의의결서 : 별지 제2호서식

- 제7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7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
 -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지원
 -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 이 필요한 경우
 -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 5.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
 - 6.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 ② 협의체는 시장에게 사업개시 ②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 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 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 업개시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 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후 보완·수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 원할 수 있다.

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 자 할 때에도 같다.

〈신 설〉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제10조(기금의 용도)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 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 2. 기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 생략
- ② 위원회는 ~ 하여야 한다.
- ③ ~ ④ 생략

- ③ 기금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범위 안에서 가구 별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1. 제7조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 2.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 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 제외 한다.
- ③ ~ ④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 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별표]

지원사업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장학금 지급등의 생활보존 관련시 업 ○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 함한다)	구 분	지 원 사 업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도로시설의 설치 ○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환경위생시설의 설치 ○ 운동·오락시설의 설치 ○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 교육기자재, 도서공급 및 학자금, 장학금 지급등의 생활보존 관련시업 ○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1. 소득향상	○ 상공업시설의 설치
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논산시장이 정하는 사업	2. 복리증진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도로시설의 설치 ○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교육문화시설의 설치 ○ 환경위생시설의 설치 ○ 운동·오락시설의 설치 ○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 교육기자재, 도서공급 및 학자금, 장학금 지급등의 생활보존 관련사업 업 ○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u>〈삭</u>제〉

ж ыл

- 1)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 2)상·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주택개량 등의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O 해당없음
- 2. 비용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나. 추계결과
- 3. 작성자

환경과장 이 한 철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 별로 달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 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 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원의 목적
- 2. 지워기간
-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 4. 지원사업이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	
대 사업		• 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	
		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	
		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B 이 기구기, 이고(嚴超), B고(怀起), 이 B 이 기고,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	
	6 6 日 기 근		
	코 코 사 어	(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0 月 1 ス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		보건진료소 등	
진 사업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	
	F 7 1 2	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	
		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 · 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	
		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 • 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	
		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	
		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	
		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난방시설	
		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	컴퓨터 ㆍ 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		
업	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